간호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21.11.03. 개정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대학원장이 승인하여 시행하는 간호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이하 "청구논문"이라 한다) 대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요건) 2019학년도 1학기 이후 간호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청구논문 대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 신청 절차를 거쳐 학위 청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제1 저자"는 논문에서 가장 중심되어 중심적으로 수행한 저자를 말한다.
- 2. "국제저명학술지"는 SSCI와 SCIE, A&HCI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3. "국제학술지"는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4. "게재"란 논문이 실릴 학술지의 권, 호, 쪽수가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 5. "게재 확정"이란 논문이 실릴 학술지에 e-publish 및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부여된 경우를 말한다.
- 6. "게재 예정"이란 학술지 편집자로부터 논문게재에 대해 accept letter를 받은 경우로서 증빙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청구논문 대체 인정기준) ① 간호학과 석사과정 입학 이후에 제1 저자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제학술 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대체하여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u>다만, 부실</u>학술지(위조 학술지, 약탈적 학술지, 대량 발행 학술지 등)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논문을 대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게재 논문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청구논문 대체 신청인이 제1 저자이고 논문지도 교수가 교신저자로 저자 총수는 2인 이내
- 2. 논문의 Affiliation에 'Hanyang University'(또는 '한양대학교')를 포함
- 3. 청구논문 대체 심사 마감일 이전까지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게재 또는 게재 확정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학장은 청구논문 대체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 자격과 청구논문 대체 인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 ③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대학원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절차)** ① 청구논문 대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학기를 마친 이후 해당 신청 기간에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연구계획서를 입력하고 이를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② 청구논문 대체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세 학기를 마친 이후 학위 청구논문 신청 마감일까지 청구논문 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체 실적이 적어도 학술지 게재 예정 단계인 경우에 한한다.
- ③ 청구논문 대체 신청을 할 때에도 제4조제2항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구논문 대체 심사이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논문 대체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⑤ 청구논문 대체 인정을 받았더라도 추후 위조 또는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 실적 및 수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2021.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5.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2조에서 재입학한 사람은 처음 입학한 때를 석사과정에 입학한 날로 본다.